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월 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대상 및 규모 삭제(안 제25조)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중복
- 나. 건축물 경관심의 생략 대상 신설 및 정비(안 제26조)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과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심의 생략
 - 표준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삭제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 생략
- 다. 공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안 제27조)
 - 위원장(부시장→호선) : 2017. 2. 28. 「경관법 시행령」 개정
 - 부위원장(호선 → 조항 삭제) : 상위법 근거 없음
- 라. 경관심의 시설물 심의대상 삭제 (안 제28조)
 - 『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 별표 2 관련
- 마. 경관자문 시설물 심의대상 삭제 (안 제31조)
 - 『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 별표 3 관련

바. 별표 정비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정비 및 타 위원회 중복 심의대상 삭제

3. 검토의견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를 생략하는 대상을 신설 및 정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조례안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는 상위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 삭제함.
- 조례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과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 경관심의에 대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시 안산시에서 제시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을 권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경관법 시행령」이 “공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되어 제1항 제2호는 삭제하고, 공동위원회의 간사는 “부서장”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함.

- 조례안 제28조(경과위원회 심의대상), 조례안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은 『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삭제하고, 안 별표2, 안 별표3도 삭제함.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관심의 대상이 축소되는 만큼 경관심의 생략대상에 대한 적정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월 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과 같은 법 시행령(2016.7.6.) 일부개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17.3.13.)의 전부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변경된 인용 법령명 및 용어 반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벽면이용간판
-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8조제4항 삭제(2016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
-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신설(안 제18조의 2)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규정(안 제19조의 2)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 변경

3. 검토의견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명을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조례안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에서는 가로형간판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함.
- 조례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제4항은 2016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임에 따라 삭제함.
- 조례안 제18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전자게시대의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 운영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 표출대상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행정대집행의 특례)에서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동 조항이 신설되면 매년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에 안전상 꼭 철거가 필요한 옥외광고물을 조사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는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삭제함.
- 조례안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례안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조례안 제24조(~~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용어를 정비함.
- 조례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의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 조례안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법령명과 옥외광고업을 공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조례안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수수료~~)에서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임.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월 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정이유

-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업광고 욕구 해소를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통해 징수한 사용료 수익으로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증대에 기여

2. 주요내용

-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수탁업자의 선정방법, 자격조건,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7조)

3. 검토의견

- 공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조례명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본문 용어를 준수하여 조례명을 “안산시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을 준수하여 정의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팔호는 문미 중 사용하는 해당 용어로 변경하여 기술하고 “설치 또는 관리”는 “설치·관리”로 수정하고 여러 번 사용하는 공 고물의 표시는 “광고표시”로 용어약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방향 (내용 일부 수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이하 “광고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에서 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용어약칭인 “광고표시”로 수정하고 조례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의 제목에 “징수”를 추가하고 문두 중 주어를 광고표시의 허가권자인 “안산시장”으로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함.
- 여러 번 사용되는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등은 “광고주”를 약칭으로 사용하고 조례 입법의 “부합성 원칙”, “기술(記述) 원칙”, “실효성 원칙”, “일치성 원칙”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방향 (조의 제목 및 내용 일부 수정)

제3조(광고표시 및 광고료 수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등(이하 “광고주”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에는 시에 주소나 사업소 등을 두지 않은 광고주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표시를 허가한 때에는 해당 광고주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이하 “광고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광고료의 월별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조례안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는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여 내용이 “광고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에 관한 제3조 다음으로 “수정 제4조”로 변경 배열하고,
- 제2항은 “광고료”에 대한 “제1항”的 “예외”가 아니라 “특별규정”이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하고 “계약”도 “광고계약”을 명확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방향 (내용 일부 수정)

제4조(납부방법) ① 광고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다만,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금액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으며 그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광고계약에 따라 해당 광고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업자와의 해당 계약에 따른다.

- 조례안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에서 이 조의 제목은 각 항의 중요 내용과 부합하도록 “관리위탁”으로 수정하고
- 시설물을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운영은 예외라는 취지를 존중하여 “전단에는 직접관리, 후단에는 관리위탁으로 전단을 설치하고 후단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 “관리위탁”에 관한 제1항은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본문은 관리위탁 근거, 단서는 관리위탁 대상자로 배열해야 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문안은 “단서” 중으로 변경 기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2항에서는 광고표시 시설물은 법적 “행정재산”이므로 그 “수의 계약”에 관하여 “초안 단서”에서 “시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하여야 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계약”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에 관한 “제3항”을 설치하고 “본문~~·~~계약체결, 단서~~·~~계약에 적용되는 위탁기간 및 적용규정”에 관한 문안으로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배열하고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그 “사용·수의허가”로 간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준수하는 문안을 “제4항”을 설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방향 (조의 제목, 내용 수정)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광고표시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업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에 소재하거나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선정한다.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
 3. 시가 공공시설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②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업자와 해당 관리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수탁업자에게 광고료 징수대상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업자는 그 징수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정, 납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조례안 제5조(위탁의 취소)에서 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위탁계약은 약칭용어인 계약으로 수정하고, 넓은 의미의 “행정재산”이라는 법적 성경과 “위탁”이란 용어는 동일하더라도, “위탁대상” 및 “지방의회의 사전동의”에 있어서 “민간위탁▶공공시설▶동의·필요, 관리위탁▶행정재산▶동의·불필요(계약절차)”란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 “인용한 조례”가 적절하지 않은 조례의 준용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를 “수정 제5조제4항” 중 적법하게 미리 인용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인용조례”는 삭제, “최소 등 사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란 문안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방향 (조의 제목, 내용 수정)

제6조(계약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제를 원한 때
 2. 영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도·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과태료)에서는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별표 8의 범위에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준수하여 제2항을 신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방향 (내용 일부 수정)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별표8과 같다.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료의 징수를 면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에 처한다.

-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나,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월 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2017. 1. 17. 개정된 「도로법」 및 2016.12.30.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의2)
-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는 「도로법」 제68조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안 제5조)
-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안 제8조)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별표 1)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조례안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 조례안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3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임.
- 조례안 제5조(점용료의 감면)은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점용료 감면 규정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함.
- 조례안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의거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함.
- 조례안 별표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영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규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임.
- 조례안 별표2 “점용료조정산식”은 조례안 제5조(점용료의 감면)에서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를 따르도록 하여 삭제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